■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8. 6. 29.>

조직은행설립 허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60일

신청인 (대표자)	조직은행 명칭	사업자등록번호
	소재지	
	성명	생년월일
조직은행의 장	성명	생년월일
의료관리자	성명	면허종별/면허번호

조직은행 유형	[ ]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[ ] 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[ ] 조직가공처리업자 [ ] 조직수입업자
업무구분	[ ] 채취 [ ] 저장 [ ] 처리 [ ] 보관 [ ] 분배 [ ] 수입
취급 조직의 유형	[ ] 뼈 [ ] 연골 [ ] 근막 [ ] 피부 [ ] 양막 [ ] 인대 [ ] 건 [ ]심장판막 [ ] 혈관 [ ] 신경 [ ] 심낭

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전단 및 「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직은행의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담당자 성명

담당자 전화번호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	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수수료
첨부서류	1. 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 2. 시설·장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와 의료관리자의 면허증 사본 각 1부 3. 품질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4.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협력관계 또는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력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5. 사업운영계획서 1부	1.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(의료기관인 경우)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) 3. 사업자등록증(조직가공처리업자 또는 조직수입업자인 경우)	없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, 신고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위 기재사항(생년월일, 면허종별, 면허 번호 등)은 틀림이 없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(신청인) → 접 수 → 검 토 → 필요시 실태조사 → 허가여부 결정 → 허가증 발급 (처리기관 : 식품의약품안전처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